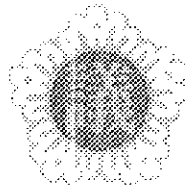


제225회 임시회

2004. 3. 29. (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3월 16일
- 회부일자 : 2004년 3월 18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【경제과】

- ‘유통산업발전법’의 개정으로 “대규모점포의 등록, 등록취소, 청문 등 대규모점포” 관련 사무가 시·도에서 시·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도록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,
- “대부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” 사무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지성에 맞게 시·군에 위임함.

【기업지원과】

- ‘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’의 개정으로 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(변경)허가”관련 사무가 시·군에서 시·도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,
- ‘에너지이용합리화법’의 개정에 따라 “에너지사용량 신고”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시·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며,
- 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’이 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’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, 음성군 관내 니트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음성군수에게 위임함

【환경과】

- ‘소음·진동규제법’, ‘대기환경보전법’ 개정으로 “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”사무가 시·도에서 시·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

【보건위생과】

- ‘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’의 개정에 따라 “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”가 시·도에서 시·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

【농산지원과】

- ‘농약관리법’의 개정으로 “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” 등의 사무가 시·도에서 시·군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
- ‘농어촌정비법’이 개정됨에 따라 “환지계획의 인가, 고시 및 통지”등의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·도 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

【축 산 과】

- ‘가축전염병예방법’ 개정으로 “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”등의 사무가 시·도에서 시·군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

【건축문화과】

- ‘주택건설촉진법’이 폐지되고 ‘주택법’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”의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·도사무로 이양되어 기존 규칙으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함

【지역개발과】

- 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’이 제정된 후 “도시관리계획 결정업무” 사무를 시·도에서 운용함에 있어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지성에 맞게 시·군에 위임함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관련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,

- **경제과 소관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무**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,

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(2002.8.26, 법률 제06706호) 시행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대부업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,

- **기업지원과 소관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(변경)허가** 관련 사무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개정(2003.9.29, 법률 제06976)으로 시장·군수 사무에서 시·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며,

규칙으로 위임하던 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사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(2003.12.30, 법률 제07018호)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,
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(2002.12.30, 법률 제06842호)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6의 지방산업단지관련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,

- **환경과 소관의 자동차운행의 규제 및 운행차수시점검** 사무가 소음·진동규제법(2002.12.30, 법률 제06845호)과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(2002.12.26, 법률 제06826호)으로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
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업무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며,

- **보건위생과** 소관의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무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개정(2003.4.10, 보건복지부령 제00245호)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
- **농산지원과** 소관의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농약관리법의 개정(2002.12.11, 법률 제06763호)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,

규칙으로 위임하던 환지계획의 인가, 고시 및 통지 등의 사무가 농·어촌정비법의 개정(2002.12.26, 법률 제06819호)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며,

- **축산과** 소관의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사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문개정(2002.12.26, 법률 제06817호)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며,

- **건축문화과** 소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무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(2003.5.29, 법률 제06916호) 됨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며,

- **지역개발과**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사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(2002.2.4, 법률 제6655호) 되어 시·도지사가 행사하였으나, 운영상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지성을 감안하여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,

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